

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7. 12. 1.

제안자 : 김범기 의원의

수정 이유

-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례 시행을 도모함은 물론, 현실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

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6조제1항중 " 당해 지역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" 를 " 당해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" 로 함

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중 " 당해 지역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" 를 " 당해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" 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</p> <p>제6조(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지정 제안)</p> <p>①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<u>당해 지역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</p> <p>제6조(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지정 제안)</p> <p>①.....<u>당해</u> <u>지역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